

## 시간제등록생규정

1998.07.01.제정    2000.07.10.일부개정    2006.03.01.일부개정    2009.09.01.일부개정

### <학사관리팀>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열린 교육체제와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36조 제1항 및 동명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학칙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시행하는 시간제 등록생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06.3.1.)

제 2 조 (지원자격)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. 다만, 대학 재적생은 지원할 수 없다.

제 3 조 (전형방법) ①매 학기 단위로 선발하며, 전형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006. 3.1.)  
②(삭제 2006.3.1.)

③전(前)학기 수강자가 계속 등록을 원할 때에는 전형절차 없이 합격자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 4 조 (모집인원 및 대학(과)) ①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의 입학정원은 총장이 따로 정하며,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수업을 받는 학생의 입학정원은 총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의 범위 이내로 한다.(개정 2009.9.1)

②(삭제 2009.9.1)

③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으로 분리하여 선발 할 수 있으며, 구체적 시행은 모집 시기에 공고한다.(개정 2009.9.1)

제 5 조 (학기제 및 수업년한) ①연간 1학기, 2학기, 계절학기 등 다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계절학기는 여름방학 또는 겨울방학 중에 실시한다.

②수업년한은 제한이 없다.

제 6 조 (교육과정(개정 2006.3.1.)) ①교육과정은 본 대학교 정규과정 학생과 통합하여 운영한다.(개정 2006.3.1.)

②(삭제 2006.3.1.)

제 7 조 (신분변경) 시간제등록생이 일반학생으로의 신분변경은 일반학생의 편입학 절차에 따른다.

제 8 조 (등록금책정) 시간제 등록생의 등록금 책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(개정 2009.9.1)

제 9 조 (등록제한 및 취소)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거나 본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는 등록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.

제10조 (신청학점) 신청학점은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 점을 초과 할 수 없다.(개정 2009.9.1)

제11조 (삭제 2009.9.1)

제12조 (학위수여) ①본 대학교의 학위를 원하는 자는 본 대학교에서 최소한 85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

②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졸업종합시험 및 학위수여심사에 통과된 자는 학칙 제39조에 따라 해당하는 학위를 수여한다.(개정 2006.3.1.)

③학위수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위수여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3조 (각종증명서발급) ①시간제등록생의 신청에 의하여 학점인정, 학력인정 및 학위수여 등에 대한 해당증명서를 발급한다.

②시간제등록생은 정규학생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한다.

제14조 (관계법규의 준용)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고등교육법,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본 대학교 학칙과 이와 관련된 제반규정을 적용한다.(개정 200 6.3.1.)

#### 부 칙

본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본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